

동체육회 규정

2022. 7. 8. 개정

2022. 2. 10. 전부개정

2021. 12. 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3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단체로 가입된 동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동체육회는 해당 동명을 포함하여 ‘광진구○○○동체육회’로 하며, 영문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제2조(목적) 동체육회는 광진구의 체육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복지향상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동체육회의 사무소는 해당 동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동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해당 동 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동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해당 동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조직) ① 동체육회의 구성원은 해당 동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동체육회의 회원단체는 종목단체 및 클럽단체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동체육회는 필요 시 협력단체를 둘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동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동체육회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체육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동체육회는 체육회의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회원단체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동체육회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단체의 제명 및 징계)

① 회원단체가 제6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동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회원단체의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④ 동체육회에서 발생하는 징계 관련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① 동체육회의 총회는 가입된 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동체육회에 서면(전자메일을 포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동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체육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임(사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1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동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동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월례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15조(임원) ① 동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권고)
3. 이사3인이상 10인이내(회장,부회장)
4. 감사 1인

② 동체육회의 임원은 동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회장의 선출) 동체육회의 회장은 자치동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수석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회장이 중도 사직할 경우 남은 잔여기간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이를 광진구체육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9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사무장제외)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동 주민센터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동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광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

제24조(회원단체의 조직 및 구성) 동체육회 회원단체는 지역 내 체육동호인, 종목단체 및 클럽 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

제25조(회원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동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장은 동체육회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동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광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동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제27조(재원) 동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 · 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28조(회계연도) 동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동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등) ① 동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동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 동체육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장과 동체육회 담당 주무관을 포함하여 구성하길 권장한다.

제9장 보 칙

제32조(규정의 해석 등) ① 구체육회 정관 제54조에 따라 동체육회 규정은 이 규정에 우선하며 동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구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2. 7. 8>

부 칙(2021. 1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